

# 평신도직분천거위원회

## 1. 목적

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새로운 직분자들을 선별하여 세우는 일을 한다.

## 2. 역할/주요업무 처리절차

- 1) 교인 중에서 (1) 기본적인 자격, (2) 성경 지식과 기독교 신앙, (3) 인격과 성품과 덕망, (4) 행정 능력과 지도력, 그리고 (5) 본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별한다.
- 2) 별도의 천거 시행 세칙에 따라 심의하여 새로 평신도 직분에 임명할 후보자들을 합동임원회에 천거한다.
- 3) 장로의 경우, 교인총회의 인준이 필요하다 (세부사항은 선출 규정 및 시행세칙을 참조).

## 3. 조직/임원

- 1) 담임목사(위원장), 부목사 1 인, 장로 3 인, 권사 3 인, 합동임원회장, 평신도대표(부위원장) 각 1 인 총 10 명으로 구성한다.
- 2) 장로 3 인과 권사 3 인과 예비위원 (장로 1 인 및 권사 1 인)은 매년 공천위원회가 추천하고 합동임원회의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.

## 4. 책임

- 1) 천거위원회는 천거회의와는 별도로 부위원장(평신도대표)의 주도로 연초부터 필요한 기초작업을 하여야 한다.
- 2) 부위원장은 연초에 그 해의 장로 및 권사 직분천거 대상자 명단을 위원장으로부터 받아서 7 월의 천거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대상자에 대하여, 평신도 직분 평가표의 각 항목에 의거하여, 개인별로 관찰하고 확인하여야 한다.
- 3) 부위원장은 해당연도의 천거위원회 활동을 마칠 때에는 그 해의 활동을 결산하여 직분천거 규정 및 세칙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절차에 따른 승인을 받아서 차기 년도의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## 5. 행사

- 1) 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매해 7 월 중에 첫 모임을 가지고, 필요에 따라 2-3 차례 계속하여 모임을 갖는다.
- 2) 각 회의는 전체위원 중 3/4 이상의 참석을 요건으로 한다.

### 1) 평신도 직분 선출 규정 시행 세칙

[세칙 최종 수정: 2015]

본 세칙은 와싱턴한인교회 평신도 직분 선출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명시해 천거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덕스러운 선출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.

## 1. 천거위원회 모임

- 1) 시기와 장소: 천거위원회는 해당 년도의 업무를 준비하기 위한 첫 모임을 1/4 분기 중에 갖는다. 천거 작업을 위한 “천거회의”는 선출된 해당 년도의 7 월 중에 첫 모임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위원장이 소집한다. 회의 장소는 와싱턴한인교회 내로 하되,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의 장소에서 모일 수 있다.
- 2) 회의 성립 정족수: 천거위원회가 성립되기 위한 위원의 정족 인원은 전체 위원 중 3/4 이상의 참석으로 한다.

## 2. 직분자 정원 산정 자료:

평신도 직분자의 정원 산정을 위해 필요한 본 교회 주일예배 출석자의 통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적용한다.

- 1) 예배 출석 인원은 1, 2, 3, 4 부 예배 참석 인원의 최근 1 년 간 합계를 주일 수로 나눈 평균치를 사용한다.
- 2) 최근 1 년 간의 기간 책정은 전년도 7 월 첫 주로부터 해당 년도 6 월 말까지로 한다.
- 3) 정원 산정 시에 나올 수 있는 소수점 이하의 수치는 올리는 것으로 한다.
- 4) 천거 시 직분자의 정원은 반드시 채우지 않아도 된다.

## 3. 각종 연한 및 기간 산정 기준

- 1) 기본 자격 요건에 명시된 연령, 자격 햇수, 재적 및 출석 기간 등의 산정은 해당 년도의 7 월 1 일(포함)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.
- 2) 은퇴 제도에 적용하는 연령은 본인이 실제 도달한 해의 말까지로 한다.

## 4. 천거 작업을 위한 대상자 명단 준비

- 1) 신천 직분자:
  - a. 집사 천거 대상자는 기본 자격 요건이 구비된 교인들 중 각 위원들이 제출한 명단과 목회실과 속회 조직을 통하여 제공된 명단을 기초 자료로 한다.
  - b. 권사 및 장로 천거 대상자는 교적부를 바탕으로 교회 사무실에서 준비한 기본 자격 요건이 구비된 천거 가능 대상자 명단을 기초 자료로 사용한다.
  - c. 권사 및 장로 대상자는 필요할 경우 위원들이 참고할 만한 소견을 목회실에서 첨부하도록 한다.
- 2) 이명 직분자:

교적부 또는 기타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거하여 교회 사무실에서 준비한 소정의 유예기간을 지난 대상자 명단을 사용한다.

## 5. 천거 세부 절차

- 1) 집사: 대상자를 개별적으로 심의하여 가부를 묻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천거를 확정한다.
- 2) 권사 및 장로: 해당 년도의 정원을 참조하며, 천거 방법을 당시의 상황에 맞도록 별도로 의논하여 시행하되, 차후에 참고하고 절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각 연도별 천거과정을 기록으로 남긴다.
- 3) 투표 시행 이전에 반드시 대상자들에 대한 목회실의 보충 소견을 듣는다.
- 4) 천거할 권사 및 장로의 최종 결정은 무기명 투표로 한다.

- 5) 권사 및 장로의 경우 최종 투표 이전에 위원회가 채택한 별도의 평가표를 사용하여 대상자를 좀 더 자세히 파악할 수도 있다. 평가표 결과는 참고용일 뿐이며, 실제 투표와는 무관하다.
- 6) 천거를 확정하기 전에 선별된 대상자들 개개인에 대해서 (1) 기본 자격, (2) 성경 지식과 기독교 신앙, (3) 인격과 성품과 덕망, (4) 행정 능력과 지도력, 그리고 (5) 본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 경력 등의 측면을 최종적으로 고려한다.
- 7) 이명 직분자의 천거는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으며, 그 밖의 절차는 신천 직분자 천거의 방식을 따른다.

## 6. 천거 대상자 연락

- 1) 천거 대상자가 결정되면 위원회가 승인한 소정 양식의 서신을 우편 및 이메일로 발송하여 본인들의 승낙 여부를 받는다.
- 2) 서신 발송 후 응답 기간은 2 주 내로 한다.
- 3) 사양한 이들에 대한 후속 조치는 별도로 논의한다.

## 7. 재천거

천거를 2 년 연속 사양한 이들은 그 후 2 년간 천거 대상에서 제외한다. [이전에 실행해 왔던 천거를 사양한 분에 대한 자동 재천거는 더 이상 실시하지 않는다.]

## 8. 천거 작업 시간

천거 작업은 해당 년도의 3/4 분기 합동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최소한 일주일 이전까지 최종 명단을 마련토록 한다.

## 9. 기타사항

- 1) 천거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일체 보안을 유지하기로 약속한다.
- 2)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필요한 사항들은 위원들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.

## 2) 평신도 직분 선출 규정

본 규정에 의거하여 선출, 임명되는 집사, 권사, 장로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며, 선교 활동에 앞장설 뿐 아니라, 본 교회의 행정과 각 분야의 봉사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참여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신앙 생활을 하도록 한다.

1. **평신도 직분 후보자 천거위원회 구성:** 천거위원회는 담임목사, 부목사 1 명, 장로 3 명, 권사 3 명, 합동임원회장, 평신도대표로 구성된 총 10 명으로 한다. 장로와 권사 중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각 1 명씩의 예비위원을 둔다. 위의 장로와 권사는 매년 공천위원회가 추천하여 합동임원회 인준을 받아 선출된다. 천거위원회의 위원장직은 본교회의 담임목사가 맡는다.
2. **평신도 직분 후보자 천거 과정:** 평신도 직분 천거위원회가 (1) 기본 자격, (2) 성경 지식과 기독교 신앙, (3) 인격과 성품과 덕망, (4) 행정 능력과 지도력, 그리고 (5) 본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 경력 등을 고려하고, 별도의 천거 시행 세칙에 따라 심의하여 새로 평신도 직분에 임명할 후보자들을 합동임원회에 천거한다.

3. **평신도 직분의 정원:** 본 교회 최근 1 년 간의 성인 평균 예배 출석자의 3%를 장로의 정원으로 한다. 권사와 집사 직분에는 정원을 두지 않는다 (시무직에서 은퇴한 장로는 계수에 포함되지 않음). 단, 타교회에서 이적해 온 장로의 수는 본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.

4. **기본 자격과 임기**

	집 사	권 사	장 로
년령 (만)	25 세 이상	35 세 이상	40 세 이상
자격	세례 받은 지 3 년 이상 된 자	집사로 5 년 이상 봉사한 자	권사 또는 안수집사로 5 년 이상 봉사한 자
본교회 재적 및 실제 출석	1 년 이상	3 년 이상	5 년 이상
임기	영구직	영구직	영구직

5. **인준**

- 1) 평신도직분 천거위원회가 천거한 후보자들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선출된다.
    - a. 집사: 합동임원회에서 출석인원 2/3 이상의 찬성
    - b. 권사: 합동임원회에서 개인별 무기명 투표로 출석인원 2/3 이상의 찬성
    - c. 장로: 합동임원회에서 개인별 무기명 투표로 출석인원 2/3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, 교인총회에서도 개인별 무기명 투표로 출석인원 2/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함
  - 2) 위의 과정을 거쳐 선출된 권사와 장로 후보는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가 제정한 소정의 심사 과정을 거친다.
6. **교육:** 평신도 직분에 피택된 집사, 권사, 장로는 담임목사가 주재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.
7. **취임과 안수:** 소정의 과정을 거쳐 인준된 집사와 권사는 담임목사가 주재하는 취임식을 거쳐, 그리고 장로는 담임목사가 주재하는 안수례를 거쳐 각각 평신도직분을 받게 된다.
8. **시무직 은퇴:** 권사 및 장로는 만 70 세에 은퇴한다.

9. **타교회에서 전입한 집사, 권사, 장로의 기본 자격 및 예우:**

- 1) 유예기간: 타 연합감리교회에서 이적해 온 집사, 권사, 장로는 1 년, 타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이적해 온 집사는 1 년, 권사와 안수집사와 장로는 2 년으로 한다. 장로 제도가 있는 교회에서 받은 안수집사의 직분은 본 교회 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고, 장로제도가 없는 교회에서 받은 안수집사의 직분은 본 교회 장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되, 소정의 절차를 밟는다.
- 2) 취임: 위의 유예기간을 거친 집사, 권사, 장로는 평신도직분 천거위원회의 천거로 합동임원회의 인준 (집사는 총괄적으로, 권사와 장로는 개별적으로 참석인원 2/3 이상의 신임을 얻어야 함)을 받은 후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취임함.
- 3) 은퇴 권사 및 은퇴 장로 천거: 시무직 은퇴 연령을 넘어 타교회에서 전입한 장로와 권사는 시무직 은퇴 연령에 준하여, 그리고 9-(1)항의 유예기간에 준하여 예우하도록

평신도직분 천거위원회에서 천거할 수 있다.

10. **개선방안의 제안:** 부위원장은 당해년도의 천거위원회 활동을 마칠 때에는 당해년도 활동을 결산하여 직분천거 규정 및 세칙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절차에 따른 승인을 받아서 차기년도의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11. 본 규정은 합동임원회의 동의, 채택과 동시에 시행된다.  
본 규정은 1993 년에 제정된 것을 2008 년에 개정한 것이며, 다시 2014 년 시행 후 2015 년에 개정함.

### 3) 평신도 직분 평가표

평신도 직분(장로, 권사) 후보자 평가표 (\*점수: 최고점- 5 점, 중간점- 3 점, 최저점- 1 점)

번호	평가사항	심사평점	가중치	평가점수
<b>성경 지식과 기독교 신앙</b>				
1	주일예배 출석		5	
2	재정적인 봉헌(주일헌금과 십일조)		5	
3	개인전도 실적		2	
4	교인된 년수		3	
5	성경통독 및 이해		2	
6	신앙교육(제자반 및 기타 클래스 이수)		2	
<b>인격과 성품과 덕망</b>				
7	맡은 일에 충실		2	
8	가족들의 신앙(귀家歸道)		1	
9	원만한 가정생활		2	
<b>행정능력과 지도력</b>				
10	성경을 가르치는 능력		2	
11	지도력		2	
12	건전한 신앙 이해		1	
13	사회적인 덕망		1	
<b>본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 경력</b>				
14	봉사 (행정직 및 자원봉사)		5	
15	교회행사 및 각종회의 참석(수양회, 부흥회, 바자, 임원회의 등)		2	
16	속회에의 참여(속원, 속장)		3	
17	성도의 교체		1	
18	추천한 천거위원 수		5	
<b>평가총점</b>		<b>C</b>	<b>B</b>	<b>A</b>

- 각 위원이 직접 알고 있거나 본인평가 및 다른위원의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항목만을 평가한다 (심사평점 x 가중치 = 평가점수).
- 평가한 항목만을 가중평균 낸다. 즉, 가중치 합계 (B)는 평가한 항목만의 합계를 적고, 평가점수의 합계(A)를 가중치의 합계(B)로 나눈 결과를 (C) 에 적는다.
- 이 평가표는 천거위원회 종료시에는 소각 등으로 폐기해야 한다.